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12호

「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.

2023년 5월 11일

## 강 룽 시 의 회 의 장

#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#### 1. 제정이유

「한부모가족법」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 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적용범위 및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・시행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등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. 지원의 중지 및 환수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번호: 033-640-4077
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
- 전자우편(이메일): hellen8762@korea.kr

붙임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####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 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강릉시 한부모가족(이하 "한부모가족"이라 한다)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3조(책무)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
  - 2.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「국민기초생활 보

- 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,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
  - 2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**제7조(지원의 중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  - 1.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  - 2.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
  - 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- 제8조(환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환수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	
○ 주		소 :			
○ 연	락	처 :			

제ㆍ개정안 내용	의	 견	비고